

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					
업체 정보	업체명		법인등록번호		
	부 문		업종 (대표업종)		
	주 소				
할당대상업체 지정근거 및 대상사업장					
할당대상업체		온실가스 배출량(tCO ₂ -eq)			
		평균	지정연도-3 (년)	지정연도-2 (년)	지정연도-1 (년)
할당 대상 사업장	할당대상사업장명 1				
	할당대상사업장명 2				
	...				
지정 사유	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,000 tonCO ₂ -eq 이상인 업체 /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,000tonCO ₂ -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				
<p>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, 제12조에 따라 귀사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(직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		
<p>※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가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자발적 참여 포기 신청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</p>					

